

'15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· 접수 안내서

- 신청절차 [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, 우편 또는 방문 신청]
 - 내국인 구인노력(워크넷 www.work.go.kr) 후 신청서류 제출
 -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(14일 이후)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
 - 14일 미경과 업체는 벼룩시장, 교차로 등 일간지 게재 후(7일 이후) 신청 가능(워크넷 병행)
- 신청서류[fes.kbiz.or.kr → 자료실 → 각종서식3번 참조]
 -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
 - ③ 위임장,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☞ 자동차정비 사업장 : ④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⑤ 전기요금청구서(산업용, 일반용 2종) 추가 제출
- 배정방법 : 점수제
 - 기본항목(사업장 규모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, 재고용 만료자수 등)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항목(우수기숙사 설치, 사업주 교육 이수 등)과 감점항목(성폭력 발생 등)으로 채점
- 대상국가 : 15개국 [인도네시아, 필리핀, 네팔 등(송출국 사정에 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)]
-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허용 인원 확대 시행

< 종 전 > < 개선 시행 >

< 종 전 >			< 개선 시행 >		
내국인 피보험자 수	총한도	신규 한도	내국인 피보험자 수	총한도	신규 한도
1명 ~ 10명	5명 이하	3명	1명 ~ 5명	5명 이하	3명
11명 ~ 50명	10명 이하		6명 ~ 10명	7명 이하	
51명 ~ 100명	15명 이하	4명	11명 ~ 30명	10명 이하	4명
101명 ~ 150명	20명 이하		31명 ~ 50명	12명 이하	
151명 ~ 200명	25명 이하	5명	51명 ~ 100명	15명 이하	5명
201명 ~ 300명	30명 이하		101명 ~ 150명	20명 이하	
301명 이상	40명 이하		151명 ~ 200명	25명 이하	6명
			201명 ~ 300명	30명 이하	
			301명 이상	40명 이하	

- ※ 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장, 최근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, 인력양성기업, 수출기업, 뿌리산업에 해당(뿌리산업증명서 제출시)사업장은 **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허용**
 - 산업부 산하 뿌리산업진흥센터(TEL: 02-2183-1615)에서 발급한 "뿌리산업 증명서" 제출 필요
- ※ 인력부족(뿌리산업)업종 및 지방소재기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% 추가고용 허용

□ 신청 · 접수 및 상담처

지 역	전 화	팩 스	지 역	전 화	팩 스
본 부	(02)2124- 3283, 3284, 4390, 4391, 4392, 4396	(02)786-2201 (02)786-3717	경기지역본부	(031)259-7801	(031)259-7810
			안산지부	(031)492-2575	(031)492-2594
			강 원 지역본부	(033)241-0013	(033)241-0015 (033)241-0705
			경기북부지역본부	(031)853-5547	(031)851-2862
부산울산 지역본부	(051)861- 9373	(051)637-2066 (051)637-2067	충 북 지역본부	(043)236-7080	(043)236-7084 (043)236-4004
대구경북 지역본부	(053)524 - 2507	(053)524-2117 (053)524-2504	전 북 지역본부	(063)214-6606	(063)214-5166
인천 지역본부	(032)437 - 8714	(032)437-8708	경 중 남 지역본부	(055)212-1175	(055)212-1170
부천시지부	(032)234 - 2810	(032)234-2813			
광주전남 지역본부	(062)955 - 0038	(062)951-9966 (062)951-9559	제 주 지역본부	(064)752-8576	(064)757-5673
목포지부	(061)284 - 6565	(061)284-0383			
대전충남 지역본부	(042)864 - 0901	(042)864-0902 (042)864-0933			
천안지부	(041)622 - 3824	(041)622-3826			